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4. 5. 2012고정41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나희석(기소), 장영일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기태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. 4. 21.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